# 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한세실업주식회사

## 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#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권한)** 위원회는, 특수관계인과 100억 원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전 심사 및 승인을 한다. 그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.

- 1.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
- 2.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
- 3.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
- 4.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

### 제2장 구 성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.

제5조(위원장)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# 제3장 회 의

**제6조(소집)**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한다.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알리고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

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(소집절차)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회의일 직전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(결의방법)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-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제10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 제4장 기타

제11조(간사)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## 제12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